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2022가단519536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11. 10.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1.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2. 24. 접수 제25005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사 김홍도

[별지 목록]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C 도로 116㎡

A 지분 전부(140분의 10)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D 도로 225㎡

A 지분 전부(140분의 10)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소외 B(이하 '채납자'라고 합니다)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1건 4,246,180원, 양도소득세 1건 473,229,330원 합계 2건 477,475,810원의 조세채권이 있으며, 피고는 채납자의 아들입니다(갑 제1호증 채납유무조회 및 갑 제3호증 가족관계등록사항조회 참조).

2. 피보전채권

가. 원고의 채납자에 대한 국세채권

원고 산하 반포세무서장은 2018. 11. 15. 채납자의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5,192,860원을 2018. 12. 15. 납부기한으로, 2019. 8. 12.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368,272,110원을 2019. 8. 31. 납부기한으로 고지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징수결정상세 조회 참조).

채납자는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2022. 7. 6. 현재 477,475,81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이 채납되어 있는 상태로 상세내역은 아래 <표1>과 같습니다.

<표1> 채납자의 2022. 7. 6. 현재 국세채납액

(단위 : 원)

세목	귀속	납부기한	합계	본세	가산금	납세의무 성립일
종합부동산세	'18	'18.12.15	4,246,180	2,869,590	1,376,590	'18.6.1
양도소득세	'19	'19.8.31	473,229,630	368,272,110	104,957,520	'19.2.28
채납액 계			477,475,810	371,141,700	106,334,110	

나. 피보전채권의 성립

우선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대법원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참조)라고 하여, 비록 사해행위 이후에 성립한 채권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는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채납자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이 사건 사해행위일(2021. 11. 22.)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 및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이 피보전채권이 되는 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3. 사해행위

가. 증여계약

채납자는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를 채납한 상태에서 2021. 11. 2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하여 이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이

르렀으므로, 이는 일반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갑 제1호증 채납유무조회, 갑 제2호증 징수결정상세조회, 갑 제4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나. 증여 당시의 채납자의 재산 상태

1)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이 사건 증여(2021. 11. 22.) 당시 채납자의 재산상태는 아래 <표2>와 같습니다.

<표2> 채납자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구분	종류	내역	금 액(원)	비고
적극 재산	부동산	서울 동대문구 C 도로 8.285㎡	8,984,250	이 사건 증여 갑 제4호증
		서울 동대문구 D 도로 16.071㎡	17,501,319	
	소 계		26,485,569	
소극 재산	국세	채납액	△477,475,810	
	소 계		△477,475,810	
순 재 산			△450,990,241	
사해행위			26,485,569	
채 무 초 과			△477,475,810	

※ 이 사건 증여 부동산의 평가액은 면적에 개별공시지가 1,089,000원을 곱하여 산정 하였습니다.

다. 채무초과 상태의 심화

채납자는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를 함으로써 26,485,569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습니다.

4. 사해의사

채납자는 이 사건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본인 소유의 별지목록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고 국세를 무납부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인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13. 04. 11. 선고 2012다107198), 이 사건에서 채납자는 이 사건 증여로 인한 행위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된다는 점을 인식하였고, 채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채납자 본인의 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해 준 점으로 보아 원고의 채납처분을 회피할 의사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5. 피고의 악의 추정

대법원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인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라고 판시하고 있으며(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

51908 판결),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따라서 소외 채납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을 피고가 스스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구체적인 정황에 비추어 피고는 소외 채납자와 부자관계로서 채납자의 채무초과 상태 및 원고의 채납처분을 면탈하기위한 사해의사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6. 제척기간

원고는 피고의 채납처분을 집행하면서 2022. 2. 4. 이 사건 증여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하면서 피고가 원고를 해함을 알고 법률행위(이 사건 증여)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사해행위를 한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 있는 날(2021. 11. 22.)로부터 5년의 각 제척기간을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7.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피고는 2021. 12. 24. 채납자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

소를 구하고자 합니다.

8. 결론

이상의 사실들로 보아 소외 체납자의 이 사건 증여는 원고를 해함을 알고서 행한 사
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
이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